

# 예산총칙

**제1조 :**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292,333,219	8,769,997
1. 일반회계	284,935,722	8,548,072
2. 특별회계	7,397,497	221,925
의료보호기금	739,646	22,189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357,896	10,737
주차장	4,990,814	149,724
주거환경개선사업	162,147	4,864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490,921	14,728
기반시설사업	354,612	10,638
지하수관리	297,561	8,927
재정비축진	3,900	117

**제2조 :**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**제3조 :**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**제4조 :** 계속비사업은 없음.

**제5조 :**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,700,000천원이다.

**제6조 :** 일반회계 예비비는 4,571,598천원으로 한다.

**제7조 :**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**제8조 :**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 보고한다.